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2. 14 선고 2022가단7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7. 2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7. 20. 접수 제36190호로 2020. 7. 20.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D의 원고에 대한 2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C은 2020. 7. 20.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7. 20. 접수 제36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C은 원고에 대하여 D의 원고에 대한 2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 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2)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3)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에 의하여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라 할 수 있는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D은 2019. 10. 17.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는 D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연대보증인란에는 C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기재된 D 및 C의 각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 필체가 동일하여 동일한 사람이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② D은 2022. 4. 12.경 자신이 임의대로 C에게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시킨 것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고에게 보냈는바, 이를 고려하면 D은 C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도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C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C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C의 인영이 C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날인행위가 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는 D의 위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C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또한 D은 원고에 대한 채무자이자 연대보증인인 C의 대리인 자격에서 2019. 10. 17.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2019년 증서 제726호로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은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D이 C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실일 뿐이고, D에게 C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주장하고자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는 D이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공증인은 D의 C에 대한 대리권을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근거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D에게 C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구미시

도로명 주소:구미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번호:

구조:철근콘크리트조

면적:7층 호 59.925㎡

토지의 표시 구미시 대2982.6㎡

대지권의 표시 종류:소유권

비율:2982.6분의 17.024

끝.

